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47
----------	-------

발의연월일 : 2025. 3. 10.

발 의 자 : 허성무 · 박선원 · 전용기
양문석 · 최민희 · 김문수
이재관 · 김준형 · 문대림
이수진 · 손명수 · 최혁진
정혜경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시설이나 사업장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경우에 한해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수 체계나 기준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가 책정되고 있는 실정임.

소속 기관에 따라 보수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며,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원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
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생 략)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u> 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u>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u>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u>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u> 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③ ----- ----- - <u>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u> ----- ----- ----- ----- -----.